



부산남구공보

제 1242호 2023.8.8.(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68 / FAX 607-4919

조 례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2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6호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7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8호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13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9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0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훈 령

- ▶ 부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4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21
- ▶ 부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439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일부개정규정] 23

공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2023년 7월 20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법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법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남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계장)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를 2023년 7월 20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6호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3.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7월 20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태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7호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를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 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5.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제3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단,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를 2023년 7월 20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8호

부산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안전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용품”이란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

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안전용품의 비치 등 권장)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의 장에게 화재안전용품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기관·시설에 화재안전용품 비치에 필요한 구입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용품 사용 등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 등이 화재 안전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안전용품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7월 20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69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대연제4동란 중 “1204(단, 1204의17, 1204의39 제외)”를 “1204(단,
1204의17, 1204의 39제외), 1924-1932”로 하고, “산223”을 “산223, 산230”으
로 하며, 우암동란 중 “1-121”을 “1-121(2의16, 3, 3의1, 3의3, 3의7, 3의8,
3의22, 3의28, 3의31 제외)”로 하고, “산1-64”를 “산1-64(산64의1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23년 7월 20일 제3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1570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및 법 제7조제3항”을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과 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조의3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제1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438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및 서기) ①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부여되는 안건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련 자문가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2023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남구 훈령 제439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남구”로 하
고, “추정·결정”을 “결정”으로 한다.

제2조 중 “구”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

제6조제2항 중 “매년 9월에”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시평가 :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공유 주지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⑦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7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
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중 “인사·노무 업무 총괄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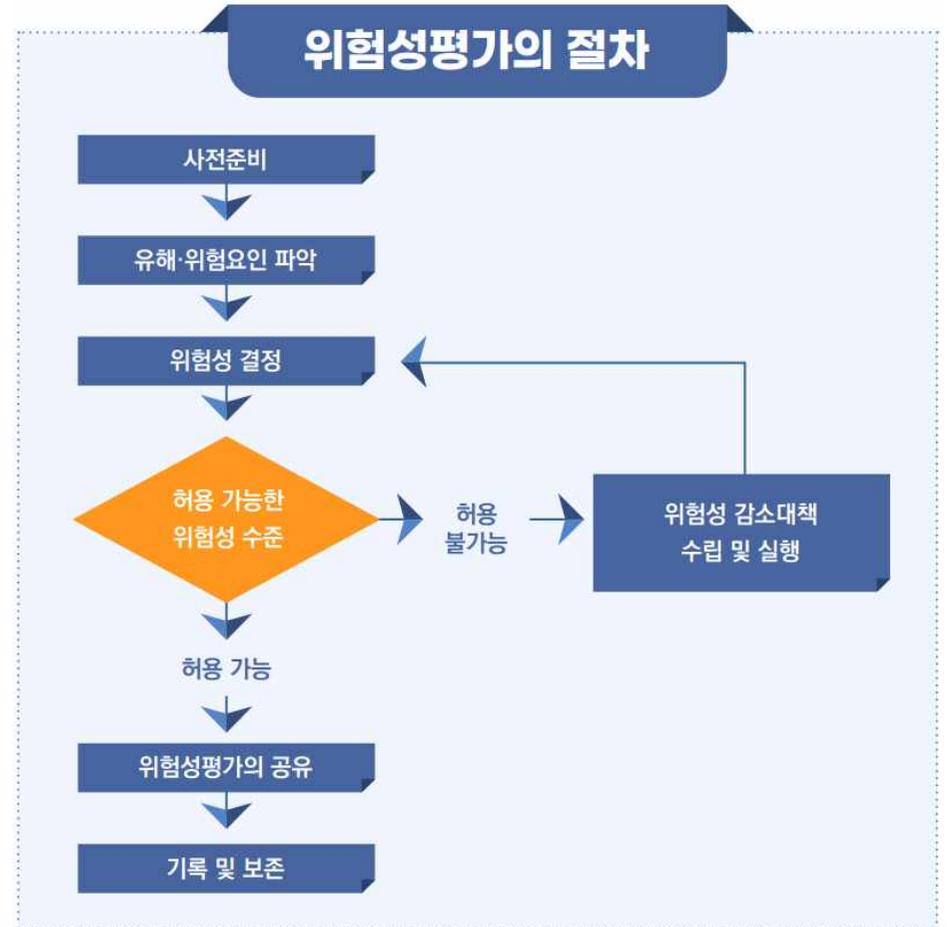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p>〈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및 의지표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아차사고 사례 등 유해·위험요인 발굴 지원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p>〈위험성평가 실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현업근로자	<p>〈위험성평가 참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활동에 참여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아차사고 사례의 적극적 제보
위험성평가 담당자	<p>〈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별표3]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

-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위험성 결정 [별표 4~6]

-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⑤ 위험성평가의 공유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게시판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 [별지 제1호의 서식]

⑥ 기록 및 보존

-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자료를 3년간 보존

[별표4] 위험성 결정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대	중	소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여부	관리기준
6~9	높음(고)	허용 불가능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3~4	보통(중)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1~2	낮음(저)	허용 가능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별표7]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 ※ 평가방법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에 준함

[별지 제1호 서식]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결과(서식)

부서명		사업장명		강 사	
일 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 내용	
회의 사진 또는 회의 자료 등	

참석자 명단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